

1. 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
 2. 생활물류시설 현황
 3.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
 4.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
 5.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제19조(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· 관리 등)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(이하 "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"라 한다)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
 2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· 운영할 수 있다.
-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1. 국토교통부,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
 2. 간행물의 발간

제20조(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등) 법 제23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· 관리
2.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
3.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홍보
4.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제21조(창업의 지원) 법 제25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세무, 회계 및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
2.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
3. 그 밖에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)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 · 보급 지원
2.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 · 교육
3. 그 밖에 전문인력 재교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3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, 대학, 기관 및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, 대학,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- 가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 -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
 - 다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
 - 라.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
 - 마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